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9월 23일, 오기형의원 등 17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9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2024.1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6.)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5.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오기형의원)

현행법에 의하면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하지 못함. 그러나 실무상 압류 단계에서 특정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임.

하지만 전국민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채무자의 신용카드대금, 임차료,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하여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며,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246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화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자연인인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압류금지생계비)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제1항),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며(제2항), 생계비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는 돈이 예치된 경우 그 초과분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제3항),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제4항).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46조의2(생계비계좌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압류금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u> <u>② 금융기관등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등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u>

	<u>며,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등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u> <u>③ 금융기관등은 생계비계좌에 압류 금지생계비를 초과하는 돈이 예치된 경우 그 초과분을 예금자를 위하여 개설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u> <u>④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u> 부 칙 <u>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	--

참고로 동일한 입법취지로 오기형 의원이 2024. 5. 31.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강준현 의원이 2024. 11. 1.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되어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원회에 계류중임.

나. 개정안에 대한 검토

(1) 생계비 계좌 개설 및 해당 계좌에 예치된 예금청구권 압류금지(안 제246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대한 검토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금지하는 국가(집행기관)의 강제적 행위를 압류라 하며, 채권과 재산권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행사를 금지시키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금지시키는 재판을 하는 방법으로 함¹⁾).

다만, 채권과 재산권이라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서 적격을 갖

1) 손천우 판사, 민사집행법, 진원사, p.215.

제3권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제251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①앞의 여러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관의 규정 및 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참고; 부동산,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것은 압류의 취지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방법으로,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현실로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압류가 행해짐.

그 후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며(유체물의 경우 매각하여 대금 취득, 재산권의 경우 추심권을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금화), 현금화된 것은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만족을 얻게됨(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순위에 따른 배당절차가 필요함).

추기 위해서는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권리가 아니어야 함.

현행 「민사집행법」과 개별 법령은 채무자의 생활보장 또는 국가·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 및 생계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정책적 이유 등으로 압류할 수 없는 권리를 정하고 있음²⁾.

「민사집행법」은 ①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②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③병사의 급료, ④급여채권의 50%(「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추가 보호 가능), ⑤퇴직금의 50%, ⑥「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금, ⑦보장성보험금 및 ⑧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185만원) 등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³⁾.

2) 손천우, 위의 책, p.688·689.

3)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신속한 채권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 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확일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음⁴⁾.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246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음.

채무자는 현행법 제246조제3항⁵⁾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 해당 예금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

4)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심문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 압류명령 발령 당시 당해 예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지 혹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원인지, 두 가지 금원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는 것인바, 신속한 채권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 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확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5)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거나,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 등을 통해 해당 예금을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위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예금이 위 규정에서 정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금융결제원 등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과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각 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등 상당한 방법으로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각 예금계좌의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자연인인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압류금지생

계비)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제1항), 해당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제4항).

이는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여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생계비계좌가 제246조제1항제8호의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계좌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그 관계를 법문 표현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에 따른 생계비계좌 금액,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액 및 제195조제3호에 따른 금전과의 압류금지순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제246조의2(생계비계좌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압류금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④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특히 개정안은 채무자에게 생계비계좌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제246조제1항제8호 및 제195조제3호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같은 취지에서 제246조의2는 생계비계좌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되 생계비계좌의 총액이 185만원이라면 본 조항만 적용되고, 185만원보다 적은 경우라면 우선 본 조항을 적용하여 생계비계좌에 있는 금액이 압류금지되고 추가로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금 및 제195조제3호에 따른 금전이 압류금지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임.

(2) 하나의 생계비 계좌 개설 및 압류금지생계비 초과분 다른 계좌로의 송금(안 제24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금융기관등이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등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 여부를 조회하여 예금자 개인 1인당 금융기관등을 통틀어 1개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비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는 돈이 예치된 경우 그 초과분을 예금자를 위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생계비계좌 신설을 통해 압류금지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압류와 관련된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압류금지생계비 초과분을 다른 계좌로 금융기관등이 송금하도록 하여 예금자의 재산권을 금융기관등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안 제246조의2제1항에서 생계비계좌를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생계비계좌에는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여 예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생계비계좌를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계비계좌 개설 조회 절차나 방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나, 개정안과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압류금지금액 상한 관련 추가 규정이 필요하며, ①개정안에 따른 생계비

계좌 금액, ②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액 및 ③같은 법 제195조제3호에 따른 금전과의 압류금지범위(순위)에 있어서 상호 우선적용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그 외 하나의 생계비 계좌 개설 및 압류금지생계비 초과분 다른 계좌로의 송금은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입장임.

법무부는 보다 실효적으로 생계비 예금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예금과 생계비 계좌 간의 관계가 불명확하며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임의경매 및 보전처분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계좌 개설과 관련한 사항은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부처(금융위 등)의 법률에 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은행연합회는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생계비 보장이 기대되나,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는 절차에 대해 법률 및 하위 법령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이성윤위원)

개정안은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압류금지채권에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추가하고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이 일반계좌에 예치된 예금에 우선하여 보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이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계좌 잔액 뿐만 아니라 1월간 입금된 금액 또한 압류금지 생계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생계비계좌 개설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대통령령 정비 등을 위하여 시행일을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함.

6. 심사결과

수정의결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1.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수정이유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이 일반계좌에 예치된 예금보다 우선하여 보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이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계좌 잔액 뿐만 아니라 1개월간 입금된 금액 또한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생계비계좌 개설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대통령령 정비 등을 위하여 시행일을 1년간 유예할 필요가 있음.

수정주요내용

가.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제246조제1항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하고 일반계좌에 예치된 예금보다 우선하여 보호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제246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안 제246조의2 제4항 삭제).

나. 1개의 생계비계좌 개설을 위해 생계비계좌 개설 조회를 위한 절

차 등 생계비계좌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6조의2제2항).

다.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및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각각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함(안 제246조의2제3항).

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수정함(안 부칙 제1조).

마. 제246조제1항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되도록 적용례를 신설함(안 부칙 제2조 신설).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4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246조의2의 제목 “(생계비계좌의 특례)”를 “(생계비계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를 “금융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2.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채권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u><신설></u>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u>금액</u>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 ----- -- <u>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u> <u>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u> ----- ----- ----- ----- ----- ----- ---- <u>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u> ----- ----- -----
<u><신설></u>	<u>제246조의2(생계비계좌의 특례) ① 대</u>	<u>제246조의2(생계비계좌) ① 대통령령으</u>

	좌를 개설하였는지 를 조회하여야 하 며, 예금자가 <u>다른 금융기관등에</u> 생계 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 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 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u>금융기관등은</u> <u>생계비계좌에</u> 압류 <u>금지생계비를</u> 초과 <u>하는 돈이</u> 예치된 <u>경우 그 초과분을</u> <u>예금자를</u> 위하여 <u>개설된 다른 계좌</u> <u>로 송금하여야한다.</u> 부 칙 <u>이 법은 공포 후 6개</u> <u>월이 경과한 날부터</u>	----- ----- -----<u>다른</u> <u>금융기관에</u> ----- ----- ----- ----- ----- ----- ----- ③ <u>생계비계좌가</u> <u>개설된 금융기관은</u> <u>다음 각 호의 금액</u> <u>이 압류금지생계비</u> <u>를 초과하지 아니</u> <u>하도록 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바에 따</u> <u>라 관리하여야 한</u> <u>다.</u> <u>1. 생계비계좌에 예</u> <u>치된 금액</u> <u>2. 생계비계좌에 1</u> <u>월간 입금된 금액</u> 부 칙 <u>제1조(시행일) 이 법</u> <u>은 공포 후 1년이</u>
--	---	--

	<u>시행한다.</u>	<u>경과한 날부터 시</u> <u>행한다.</u> <u>제2조(압류금지채권에</u> <u>관한 적용례) 제246</u> <u>조제1항의 개정규</u> <u>정은 이 법 시행</u> <u>후 최초로 접수된</u> <u>압류명령 신청 및</u> <u>취소사건부터 적용</u> <u>한다.</u>
--	--------------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 (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압류금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 (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

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2.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채권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u>금액</u>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④ (생 략) <u><신 설></u>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 ----- ----- ----- <u>금액</u>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u>금액</u> 등-----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금액(이하 이 조에서 “압류금지생계비”라 한다)</u> 을 초

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
(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
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예금자
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
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
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
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
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
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지 아
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2.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